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72호
----------	--------

제출년월일 2023. 3.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적기 시행 및 후속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구성사항 일부 변경 및 회장 부재시 회장 직무대행명시(안 제3조)
- 나. 협의회 운영(요건, 개시, 종료)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6조)
- 다. 협의회 회의 개최 시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생략(「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2)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 나) 경기도 : 자연재난과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을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제1항”으로, ““본부장””을 ““지역본부장””으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사람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 ③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

의 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의 제목 “(협회의 등록 등)” 을 “(협회 회원의 등록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1항” 을 “제3조제2항” 으로, “본부장” 을 “지역본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를 “발생한다” 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협회의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② 협의회 운영 개시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 ③ 협의회 운영 종료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로 한다.
- ④ 협의회는 제13조의 운영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분담, 협의회 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회원들에게” 를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협회의 회장” 을 “지역본부장” 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회의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담당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안전담당관 김광식
	팀장 직위·성명	자연재난팀장 연규환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이승주(☎2915)

③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기관(단체)

<신 설>

<신 설>

<신 설>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협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③ 협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회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회에 협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⑦ 협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협회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추천한 관련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원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협회의 운영)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 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② (생략)

③ 협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회로부터 업무수행

제4조(협회 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2항-----

----- 지역본부장-----.

② -----
----- 발생한다.

제6조(협회의 운영) ① 협회의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협회 운영 개시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회 운영 종료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④ 협회는 제13조의 운영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분담, 협회의 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④ 협의회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역본부장 -----

-----.

제9조(회의개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회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에서 선정·추천한 재해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회장은 재난관리실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대응정책과장과 재난원인조사실장이 된다.

③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에서는 재해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필요성 및 해당기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재난대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로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으로 추천·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 신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재난관리실장은 협의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수행방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현지조사업무 수행 계획 수립시 중복수행 방지 및 효율적인 현지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해당 부서장과 공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 소속 각 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보완하거나 회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 결과 보완을 요청 받은 회원은 보고서를 보완하여 조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중간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며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재난원인조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현지조사 중간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을 요청받은 재난원인조사실장은 내용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보고서를 보완하여,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최종보고서에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 의견조회, 추가 합동조사, 추진계획 수립 요청 등을 통해 정책환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 소속 각 해당과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 최종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협의회 활동결과를 종합정리한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재해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4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재해경감대책 협의회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담당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관(단체)

제4조(협의회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추천한 관련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회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회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회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회회의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회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협회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회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협회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기관 및 단체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회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회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회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협회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지급) <개정 2020.9.29.2.>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회회의 운영 경비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회장이 정한다.